

서울특별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 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



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중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인노무사의 자문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공인노무사 위촉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공인노무사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부서의 자문절차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공인노무사의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[참조 : 의회사무과,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, 전화 : 02-3396-8166 FAX : 02)3396-9055, E-mail : kimjh82@junggu.seoul.kr]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.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를 두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문의 범위) ①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(이하 “고문노무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
 2.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
 3. 「근로기준법」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
 4.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·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
 5. 구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
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.

제3조(위촉 및 해촉) ① 구청장은 「공인노무사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.
1.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
 3. 「공인노무사법」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 4.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

가.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

나. 상대방과의 담합

다.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

라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

제4조(임기)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자문절차)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,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당 등)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료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7조(비밀엄수)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자문 실적부

연번	자문 일자	자문건명(질의요지)	회신 일자	회신내용	부서명 (담당자)	비고

※ 자문형식은 서면·면담·전화로 구분한다.